

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			재산세 부과 안내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재산세(토지)		과세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																				
시가표준액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가격		납세의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																				
(×)	(×)		가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(지방세액의 3%)이 가산 채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) 중가산금(지방세액의 0.75%)이 추가 																				
공정시장가액비율	70%		세부담 상한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																				
(=)	(=)		과세표준	재산세(토지) 과세표준																				
(-) 감면	(-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		(×)	(×)																				
(×)	(×)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종합합산</td> <td>5천만원 이하</td> <td>0.2%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</td> <td>10만원+5천만원 초과금액의 0.3%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초과</td> <td>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0.5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별도합산</td> <td>2억원 이하</td> <td>0.2%</td> </tr> <tr> <td>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</td> <td>40만원+2억원원 초과금액의 0.3%</td> </tr> <tr> <td>10억원 초과</td> <td>2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0.4%</td> </tr> <tr> <td>분리과세</td> <td>-</td> <td>0.07%, 4%, 0.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가감 가능</p>		구분	과세표준	세율	종합합산	5천만원 이하	0.2%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0만원+5천만원 초과금액의 0.3%	1억원 초과	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0.5%	별도합산	2억원 이하	0.2%	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0만원+2억원원 초과금액의 0.3%	10억원 초과	2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0.4%	분리과세	-	0.07%, 4%, 0.2%
구분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		
종합합산	5천만원 이하	0.2%																						
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0만원+5천만원 초과금액의 0.3%																						
	1억원 초과	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0.5%																						
별도합산	2억원 이하	0.2%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0만원+2억원원 초과금액의 0.3%																						
	10억원 초과	2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0.4%																						
분리과세	-	0.07%, 4%, 0.2%																						
(=)	(=)		산출세액	재산세(토지) 산출세액																				
(-)	(-)		세부담상한 초과액	세부담상한액 =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× 150%																				
(=)	(=)		납부할 세액	재산세(토지) 납부할 세액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		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																						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																						
구제신청 기한 안내																								
이의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																							
심판청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 																							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--

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			재산세 부과 안내	
구분	재산세(토지)		과세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
시기표준액 (×)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가격 (×)		납세의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
공정시장가액비율 (=)	70% (=)		가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(지방세액의 3%)이 가산 채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) 중가산금(지방세액의 0.75%)이 추가
과세표준 (-) 감면 (×)	재산세(토지) 과세표준 (-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 (×)		세부담 상한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
세율 (=)	구분	과세표준	세율	
	종합합산	5천만원 이하	0.2%	
	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0만원+5천만원 초과금액의 0.3%	
	별도합산	1억원 초과	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0.5%	
		2억원 이하	0.2%	
	10억원 초과	40만원+2억원원 초과금액의 0.3%		
분리과세	-	2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0.4%		
*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가감 가능 (=)				
산출세액 (-)	재산세(토지) 산출세액 (-)		구제신청 기한 안내	
세부담상한 초과액 (=)	세부담상한액 =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× 150% (=)		이의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납부할 세액	재산세(토지) 납부할 세액		심판청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*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구분	과세표준	세율		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		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		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